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관련 전국 지방정부 설명회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과 | 2026.08.



CONTENTS

PART 01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법률 개정 개요

PART 02 시행령 주요 내용

PART 03 고시 조문 별 상세내용

PART 04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PART 01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법률 개정 개요



개정 개요

개정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하여 국가 차원에서 이격거리 규제 상한을 설정하여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

개정 경과

2026년 2월 12일 이격거리 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9월 18일 시행 예정

✓ 법률 개정('26.3.17 공포)

- (법적 근거)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 (내용) 원칙적 이격거리 적용 금지 및 예외사항 규정하여 재생에너지 사업의 기반 마련

✓ 시행령 및 고시(개정준비 중)

-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된 이격거리 기준과 예외사항 등을 규정
- (고시) 실제 이격거리 적용 시 필요한 사항 규정(주택, 도로의 범위 및 이격거리 산정방법 등)

개정 주요 사항

주요 내용

원칙적으로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것은 금지됨.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시행령과 고시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음.

제도 구성

이격거리 적용 예외 상황, 이격거리 적용 기준, 이격거리 산정방법 등으로 구성

적용 예외

법률, 시행령 상에서 이격거리 적용 예외 상황에 대해서 규정

- ✓ **법률**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참여형 발전설비,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는 개정안 제27조의3 제2항의 이격거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
- ✓ **시행령** | 관광지, 자연취락지구 및 발전설비 별 이격거리 적용 기준 제시(주택과 도로로부터의 이격거리)

적용 기준

시행령 상에서 태양광/풍력 발전설비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구체화

- ✓ **태양광** |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설비 경계선으로부터 주택(5호 이상) 200미터 이내, 도로 설정 불가
- ✓ **풍력** | 풍력을 이용한 발전설비 경계선으로부터 풍력 발전설비 높이의 2배 이상, 주택(5호 이상) 1,500미터 이내, 도로 500미터 이내

산정 방법

고시 상에서 주택과 도로의 범위, 기준호수 산정방법 및 이격거리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 구체화

제도 구성 요소 별 법규정

법체계

재생에너지법(근거법률) 및 하위 규정(시행령, 고시) 등 관계

구분		법률	시행령	고시(안)
관련규정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3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의3	(가칭)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제9조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원칙적 금지	제27조의3제1항(본문) 제27조의3제3항(2항 적용 예외사항)	-	-
	예외적 허용	제27조의3제1항(각 호) 제27조의3제2항(위임)	제27조의3제1, 2항(법 제1, 2항 예외사항)	-
이격거리 적용 기준		제27조의3제2항(위임)	제27조의3제2항(위임)	-
이격거리 산정방법	주택, 도로의 범위		제27조의3제3항(위임)	제4조(주택의 범위), 제6조(도로의 범위)
	기준 호수 산정방법			제5조(기준 호수의 산정방법)
	이격거리 구체적인 산정방법			제7조(풍력 발전설비의 높이) 제8조(이격거리의 측정방법)

PART 02

시행령 주요 내용



제27조의3 제1항 : 이격거리 설정 가능 지역

시행령 제27조의3 제1항

법 제27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해당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7호 가목에 따른 자연취락 지구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령 제27조의3 제1항은 지방정부가 조례로 이격거리를 정할 수 있는 지역 규정

| 관광지·관광단지 |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의 관광지 또는 제7호의 관광단지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로 이격거리 설정 가능



관광지



관광단지

| 자연취락지구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7호 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에 해당하는 경우 설정 가능

녹지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

제27조의3 제2항 제1호 :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

시행령 제27조의3 제2항 제1호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설비(이하 이 조에서 “태양광 발전설비”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태양광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발전설비와 주택 간 이격거리를 정하는 경우.

다만, 그 이격거리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이 해당 조례로 정하는 호수(최소 5호로 한다) 미만으로 있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태양광발전설비의 이격거리는 주택 200m이내에서 설정 가능, 도로는 이격거리 설정 불가

| 주택 이격거리 |

- ✓ 설정 범위 : 부지 경계선 반경 200m 이내
- ✓ 이격거리 내에 조례로 정하는 호수(최소 5호) 이상의 주택이 없어야 함

상한 200m

최소 5호

| 도로 이격거리 |

- ✓ 이격거리 설정 불가

| 대상 주택·도로 |

- ✓ (주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주택
- ✓ (도로) 대상 아님

제27조의3 제2항 제2호 : 풍력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

시행령 제27조의3 제2항 제2호

풍력을 이용한 발전설비(이하 이 조에서 “풍력발전설비”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가. 풍력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500미터 까지(최소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발전설비와 주택 간 이격거리를 정하는 경우.

다만, 그 이격거리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이 해당 조례로 정하는 호수(최소 5호로 한다) 미만으로 있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나. 풍력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까지(최소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발전설비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로 간 이격거리를 정하는 경우

풍력의 이격거리는 설비 높이의 2배 ~ 1,500m(주택) / 500m(도로) 범위에서 설정 가능

| 주택 이격거리 |

- ✓ 설정 범위: 부지 경계선 반경 설비 높이의 2배 ~ 1,500m
- ✓ 이격거리 내에 조례로 정하는 호수(최소 5호) 이상의 주택이 없어야 함

(하한) 높이 x 2

(상한) 1,500m

| 도로 이격거리 |

- ✓ 설정 범위: 부지 경계선 반경 설비 높이의 2배 ~ 500m
- ✓ 이격거리 내에 고시된 도로가 위치하지 않아야 함

(하한) 높이 x 2

(상한) 500m

| 대상 주택·도로 |

- ✓ (주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
- ✓ (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로

제27조의3 제3항 : 이격거리 산정방법 등 고시 위임

시행령 제27조의3 제3항

제2항에 따른 이격거리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이격거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격거리의 구체적 산정방법 등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시로 규정

| 위임 범위 |

제2항에 따른 이격거리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이격거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



산정 방법



필요 사항

| 고시 규정 사항 |

주택·도로의 범위, 기준 호수의 산정방법, 이격거리의 측정방법, 풍력 발전설비의 높이 등



주택·도로 범위



측정 방법

조례 개정 가이드라인

조례 개정 판단 원칙

| 원칙 |

- ✓ 주택 호수 기준 및 거리 기준은 구분하여 별도로 판단
- ✓ 조례가 시행령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현재 기준으로 유지 가능

| 태양광 |

	현행	개정		현행	개정
거리	200m 초과	200m 이내 (0/50/100m 등)	주택 호수	5호 이상 (5/7/10호 등)	현행 유지
	200m 이하	현행 유지		5호 미만 (0/1/3호 등)	5호 이상
	이격거리 미설정	현행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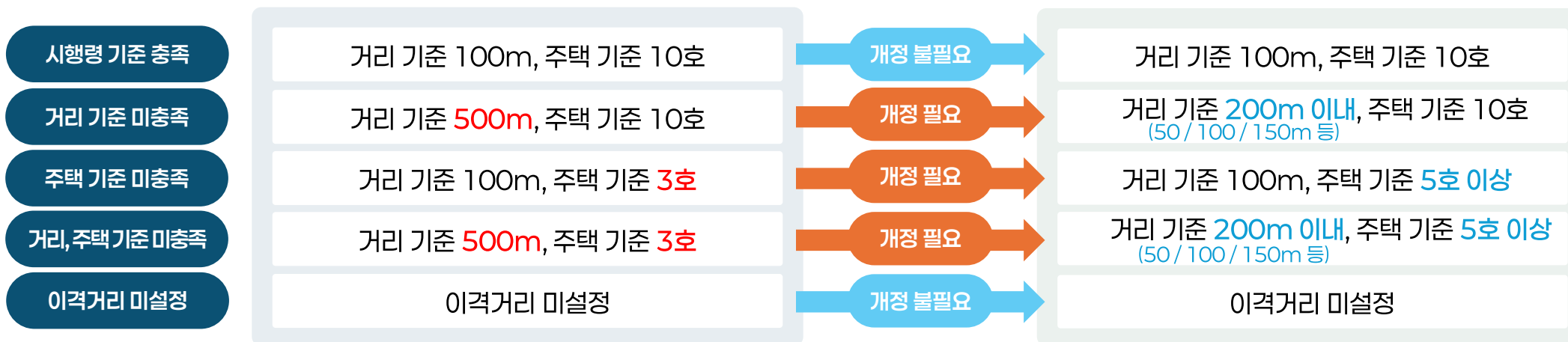
| 풍력 |

	현행	개정		현행	개정
거리	1,500m 초과	1,500m 이내 (500/700/1,000m 등)	주택 호수	5호 이상 (5/7/10호 등)	현행 유지
	1,500m 이하	현행 유지		5호 미만 (0/1/3호 등)	5호 이상
	이격거리 미설정	현행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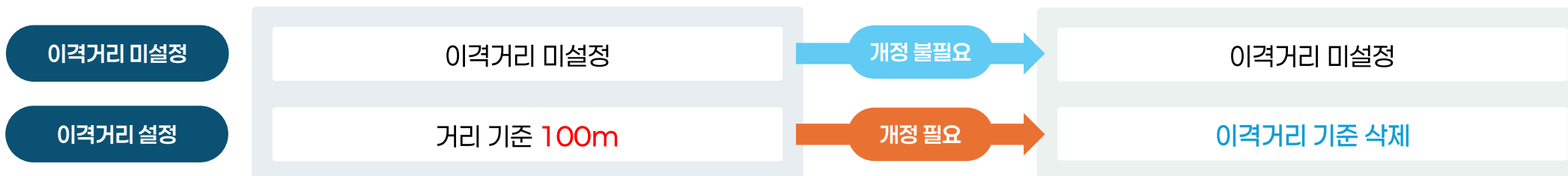
※ 하한의 경우, 풍력발전설비 높이의 2배 이상으로 설정

조례 개정 예시 :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

주택 이격거리 조례 개정 예시



도로 이격거리 조례 개정 예시



조례 개정 예시 : 풍력 발전설비 이격거리

주택 이격거리 조례 개정 예시



※ 풍력 이격거리 하한

하한의 경우 풍력발전설비 높이의 2배 이상으로 설정 (FAQ 8 참고)

ex) 풍력발전시설의 도로 이격거리는 200m로 한다. 단, 도로 이격거리가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발전설비 높이의 2배 만큼 이격하여야 한다.

조례 개정 예시 : 풍력 발전설비 이격거리

도로 이격거리 조례 개정 예시



※ 풍력 이격거리 하한

하한의 경우 풍력발전설비 높이의 2배 이상으로 설정 (FAQ 8 참고)

ex) 풍력발전시설의 도로 이격거리는 200m로 한다. 단, 도로 이격거리가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발전설비 높이의 2배 만큼 이격하여야 한다.

PART 03

고시 조문 별 상세내용



제1조 - 제3조 : 목적, 범위, 주요 용어 정의

고시 제3조 (정의)

1.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 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도로”란「도로법」제2조 제1 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3. “이격거리”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재생 에너지 발전설비의 사업부지 경계로부터 제1 호에 따른 주택의 부지 경계 또는 제2호에 따른 도로의 경계까지의 직선 최단 수평거리를 말한다.
4. “블레이드 최고점”이란 풍력 발전설비의 블레이드가 수직 방향으로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하였을 때 지면으로부터 그 블레이드 최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고시 제3조(정의)는 주택, 도로 및 이격거리 등에 대해 정의

| 주택의 정의 |

「주택법」제2조 제1호 상 규정된 주택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해당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빌라
(다세대)

| 도로의 정의 |

「도로법」제10조에 규정된 도로로서, 총 7가지 도로가 규제 대상

고속 국도*

특별시·광역시도

지방도

군도

일반 국도*

*지선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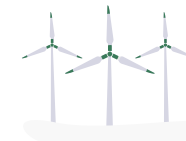
시도

구도

| 이격거리의 정의 |

사업부지 경계로부터 주택 부지 경계 또는 도로의 경계

발전설비
부지 경계



이격거리



주택·도로부지 경계
(주택·도로 경계기준 상이)

제4조 : 이격거리 산정대상 주택 기준

고시 제4조(주택의 범위)

이격거리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3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 동안 계속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주택을 주소로 하여 전입 신고된 세대가 없는 주택
2. 건축물대장에 멸실되거나 말소된 것으로 기재된 건축물

주택이라고 하여도,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거나 멸실·말소된 주택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음

| 전입신고 미신고 주택 |

주택이라고 해도 1년 이상 전입신고 되지 않은 주택은 거주를 하지 않는 ‘빈집’으로 판단해 주택 호수 산정 시 제외

기간 산정
기준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직전 1년(연속)

판단 방식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된 세대 기준

※ 직전 1년 중 1일이라도 전입신고가 되어있던 날이 있을 경우, 주택으로 포함

| 건축물대장 멸실 또는 말소 주택 |

주택 건물이 있다 하여도 건축물 대장에 멸실처리 또는 말소 처리된 주택은 주택 호수 산정 시 제외

멸실



건축물이 화재 등으로
철거, 해체된 상태

말소



건축물 멸실로 인하여
건축물대장 멸실처리

※ 건축물대장 멸실 및 말소될 경우, 본래 건축물이 없어야 하나 혹시 건축물이 존재하는 경우를 대비해 멸실·말소 주택 예외 기준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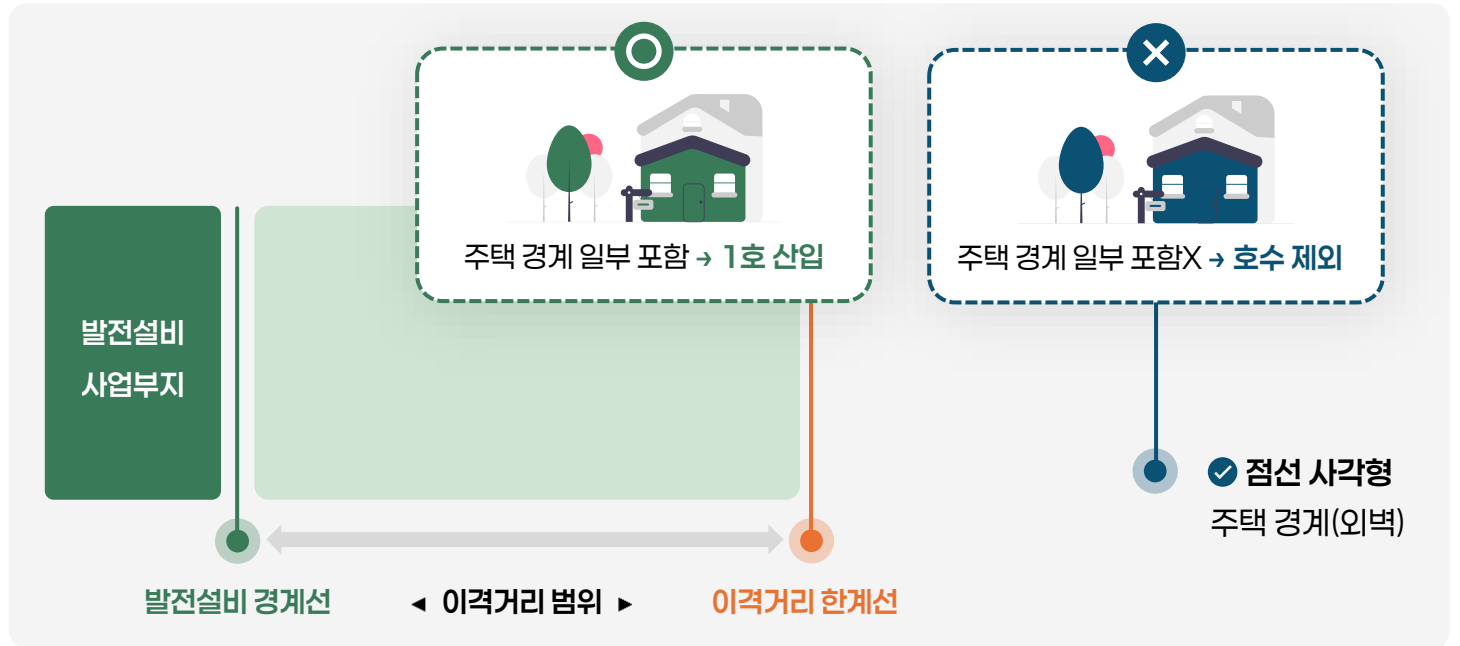
제5조 : 기준 호수 산정 방식

고시 제5조 (기준 호수의 산정방법)

영 제27조의3제3항에 따른 기준 호수는 이격거리의 범위 안에 제3조 제1호에 따른 주택(제4조에 따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경계 일부가 포함되는 주택의 수로 산정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각각 그 건축물 1동을 1호로 본다.

이격거리 내에 주택의 경계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야 '주택 호수'로 산정
단독주택·공동주택 모두 건축물 1동을 1호로 산정

| 주택 부지 경계에 따른 호수 산정 예시 |



제6조 : 이격거리 산정대상 도로 기준

고시 제6조 (도로의 범위)

영 제27조의3제2항제2호 나목에 따른 도로는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도로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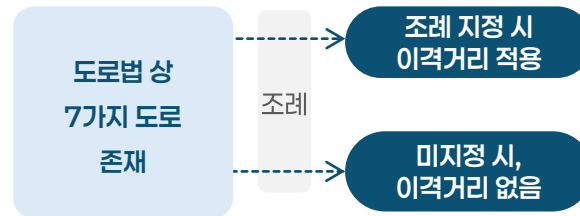
도로에 대한 이격거리는 「도로법」 상 도로 중 지방정부에서 조례로 정하는 도로에 대해서만 적용
각 도로에 대해서 규제하는 이격거리 수준을 차등하여 설정할 수 있음

| 이격거리 대상 도로 |

「도로법」 상 규정된 7가지 도로 중에서
지방정부 조례로 지정한 도로만 대상

[도로법 상 도로]

[이격거리 적용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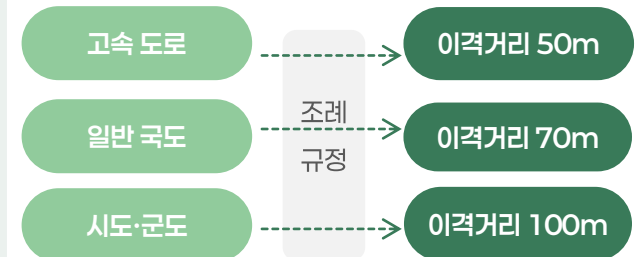


| 이격거리 차등 규정 |

개별 도로에 대해서
이격거리 수준을 차등하여 설정하는 것도 가능

[도로법 상 도로]

[이격거리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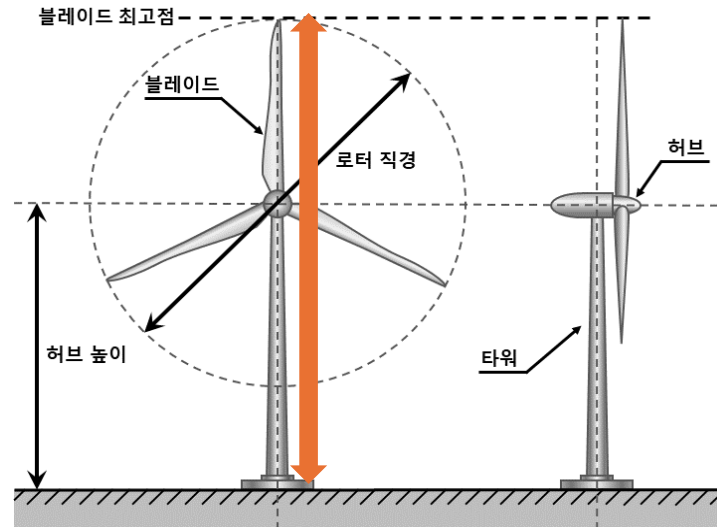


제7조 : 풍력 발전설비의 높이 기준(풍력 이격거리 하한)

고시 제7조 (풍력 발전설비의 높이)

- ① 영 제27조의3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풍력 발전설비의 높이는 [그림 1]에 따른 블레이드 최고점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블레이드 최고점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 시 제출된 사업계획서나 설비 제원에 기재된 허브 높이에 블레이드의 길이를 더한 값으로 산정한다. 다만, 블레이드의 길이가 제원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로터 직경의 2분의 1을 블레이드의 길이로 본다.
- ③ 발전설비의 기종 변경 등으로 제2항에 따른 제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제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격거리의 하한이 되는 '풍력 발전설비의 높이'는 블레이드 최고점으로 설정
발전사업허가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설비를 기준으로 산정 (풍력발전 터빈 변경 시 재산정)



풍력 발전설비의 높이 기준

블레이드 최고점
= 허브높이 + 블레이드 길이

- 1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 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설비 제원으로 산정
- 2 제원에 블레이드 길이가 없을 경우는 로터 직경의 1/2을 블레이드 길이로 봄
- 3 기종 변경 등으로 제원이 바뀔 경우에는 변경된 제원 기준으로 다시 산정

풍력발전 터빈 변경 시 이격거리
적용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함

제8조 : 이격거리 측정방법

고시 제8조 (이격거리 측정방법)

- ① 이격거리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사업부지 경계와 주택의 경계 또는 도로의 측정기준선 간의 최단 수평거리로 측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측정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경계 및 도로의 측정기준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 : 해당 주택 건축물의 외벽
 2. 도로 : 해당 도로의 경계선. 도로의 접도구역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측정 시작점) 발전설비의 사업부지 경계선이 기준

(측정 대상) 주택은 건축물 외벽, 도로는 도로 경계선(접도구역 등 제외)이 기준

| 측정 시작점 (발전설비) |

태양광·풍력 모두 발전설비가 설치되는
사업부지의 경계선이 측정 시작점

| 측정 대상 (주택·도로) |

주택 경계

건축물의 외벽
해당 주택 건축물의 외벽

도로
측정기준선

도로의 경계선
도로의 접도구역 등은 포함하지 않음

측정 예시

발전 설비 경계

최단 수평거리

주택 경계 :
주택 건축물의 외벽

도로 측정기준선 :
도로의 경계선

PART 04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Q1) 이격거리를 반드시 정해야 하는지?

아닙니다. 시행령은 이격거리 규제의 상한을 정한 것입니다.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이격거리를 규정한 지방정부는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 이내로 완화해야 하며, 시행령 기준 충족 또는 이격거리 규제가 없는 지방정부는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Q2) 어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지?

제명과 관계없이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이격거리 기준을 정한 모든 조례를 개정하셔야 합니다.

ex) 도시군계획조례,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 등

Q3) 토지형질변경 시 표고 기준 등 규제도 개정 「재생에너지법」 시행에 따라 금지되는지?

아닙니다. 개정 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설정”만 제한됩니다.

따라서, 조례상 토지형질변경 기준으로 표고,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등을 정한 경우 종전대로 적용됩니다.

Q4) 「재생에너지법」 제27조3 제1항에 따른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미가 무엇인지?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등의 ‘구역 내부’에서 이격거리가 적용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해당지역 경계로부터 이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ex)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은 문화재로부터 300m 이격하여야 한다.

Q5)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주택 5호 미만, 축사 등)도 이격거리 적용이 가능한지?

「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3 제2항에 따라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이격거리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Q6) ‘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가능합니다. 「재생에너지법」에 따르면 이격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지방정부 실정에 맞도록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Q7) 시행령 기준 내에서 지방정부 조례로 주택 및 도로 이격거리에 차등을 둘 수 있는지?

가능합니다. 시행령에서 정한 이격거리 기준 이내라면 주택 호수별, 도로 종류별로 이격거리 차등 설정이 가능합니다.

Q8) 풍력 이격거리 하한선은 어떤 식으로 규정해야 하는지?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다면 형식에 상관없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ex) 풍력발전시설의 도로 이격거리는 200m로 한다. 단, 도로 이격거리가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발전설비 높이의 2배 만큼 이격하여야 한다.

Q9)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에서 ‘지붕’의 정의가 무엇인지?

지붕형 태양광은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지붕은 경사지붕 뿐만 아니라 평지붕(옥상)도 포함됩니다.

Q10)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구조물’의 정의가 무엇인지?

「재생에너지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통상적인 건물로 분류하기 어렵지만 ‘고유의 목적을 가진 시설물의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로 보아야 합니다.

Q11) 주민참여형 발전설비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주민참여형 발전설비란 일정규모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역주민 등이 직접 참여하여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주민참여가중치를 부여 받은 설비를 말합니다.

현재 구축 중인 '재생에너지 인허가 시스템'을 통해 해당 발전설비가 주민참여 가중치를 받았는지 여부를 각 지방정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RPS제도 폐지 후 새로운 제도에서도 주민참여형 설비가 존재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형식은 논의 중입니다.

[참고]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개요

- ① 의미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이 참여하여 주민참여형 추가 가중치를 받은 발전사업
- ② 근거 : 「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2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 제7조의2
- ③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기준 : (태양광) 500kW 이상 / (풍력) 3,000kW 이상
- ④ 주민참여율 기준 : 참여한 금액이 총 사업비의 1% 이상인 경우

Q12) 주민참여를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의 주민참여 이행을 강제할 방안은?

지방정부는 주민참여 이행을 개발행위허가의 부관으로 붙일 수 있으며,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 전제사실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 보완·시정요구를 거쳐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 제5호의3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치 수준은 비례원칙·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 주민참여 부관 설계방안

- ① 부관 부가의 법적 근거 : 「행정기본법」 제17조 및 「국토계획법」 제57조 제4항 등
- ② 부관 설계 방식(지방정부 실무, 개별 발전사업의 특성에 맞도록 수정 필요)
 - 정지조건 : 주민참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개발행위허가 효력 발생
 - 해제조건 : 개발행위허가 후 일정기간 내 주민참여조건 미이행 또는 주민참여 비율 미달 시 허가 효력 상실

Q13) 이격거리 합리화에 따른 인센티브는 계속 제공되는 것인지?

법령 시행 이후로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완화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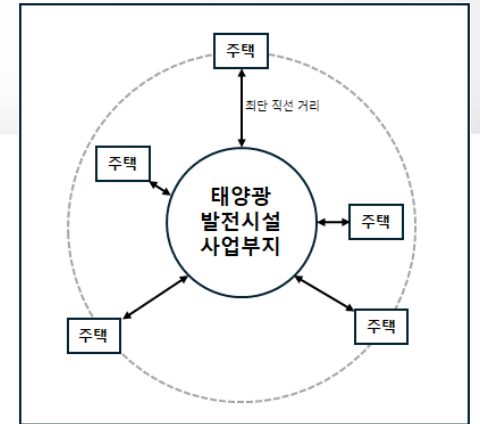
Q14) 미허가 건축물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는 주택으로 판단하는지?

미허가 건축물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는 주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① 1년간 계속하여 전입 신고가 된 세대가 없었거나 ② 멸실·말소 등 건축물 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Q15) 주택 이격거리가 ‘주택 간 이격거리’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닙니다.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반경 이내에 주택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주택 간 이격해야 하는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과 | 2026.08.

